

## 제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br>번호 | 122호 |
|----------|------|

제출년월일 : 2008년 1월 일

제 출 자 : 제 천 시 장

### 1. 제안이유

제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에서 적용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인용조항 및 문구 등을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제1조 중 “「주차장법 및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주차장법」”으로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조제3의2호 각목”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조제1항”으로
- 제3조 제3호의 “노외주차장”을 “부설주차장”으로 하고,  
제4호중 “과징금의 징수교부금(「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제10호의 「도로교통법」 관련조항 “제115조의2”를  
“제160조제항”으로 개정
- 제4조제5호의 “법 제19조의3”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3조 제1항”  
으로 하고, 제6호의 법 “제19조의10”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로 개정함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 붙임

첨 부 1. 의안전문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관련법령 1부.

4. 입법예고 및 결과보고서 사본 1부.

## 제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차장법 및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주차장법」”으로 한다.

제2조 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조제3의2호·각목”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3호 중 “노외주차장”을 “부설주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 과징금의 징수금(「주차장법」 제24조의2)

제3조제10호 중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를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 관련)”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8조 관련)”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5호 중 “법 제19조의3”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법 제19조의10”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 조문 대비표

| 현  | 행 | 개  | 정 |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과 「주차장법」 및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1조(목적) -----<br>----- 「주차장법」 -----<br>-----<br>-----<br>----- |   |   |
|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조제3의2호 각목에 의한 도시교통 정비지역과 주차장법에서 정하는 지역에 대한 교통관련 사업에 한정한다.                            |   | 제2조(적용범위) -----<br>--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조제1항에--<br>-----<br>-----  |   |   |
| 제3조(세입) (생략)   |   | 제3조(세입) (현행과 같음)   |   |   |
| 1. ~ 2. (생략)   |   | 1. ~ 2. (현행과 같음)   |   |   |
| 3.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주차장법 제19조제5항 관련)   |   | 3. 부설주차장 -----   |   |   |
| 4. 과징금의 징수금(「주차장법」 제24조의2) 및 과징금의 징수교부금(「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 관련)  |   | 4. 과징금의 징수금(「주차장법」 제24조의2)                                     |   |   |
| 5. ~ 9. (생략)   |   | 5. ~ 9. (현행과 같음)   |   |   |
| 10.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금   |   | 10.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                                     |   |   |
| 11. 「교통유발부담금」(「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 관련)   |   | 1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8조 관련)                                |   |   |
| 12. (생략)   |   | 12. (현행과 같음)   |   |   |
| 제4조(세출) ① (생략)   |   | 제4조(세출) ① (현행과 같음)   |   |   |
| 1. ~ 4 (생략)  |   | 1. ~ 4 (현행과 같음)  |   |   |
| 5. 법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정구역 등의 교통평가 및 이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의 시행  |   |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3조제1항 -----                                  |   |   |
| 6. 법 제19조의10의 규정에 의한 교통수요관리의 시행  |   |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                                     |   |   |
| 7. (생략)  |   | 7. (현행과 같음)  |   |   |

# 관계 법령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 2005.11.8 법률 7693호]

제3조 (도시교통정비지역의 지정·고시)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1. 상주인구 10만 이상의 도시(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읍·면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 이상인 경우를 뜻한다)
2. 제1호외의 지역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 시장·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도시교통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후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이하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3조 (도시교통의 개선명령)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교통정비지역안에서 도시교통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간의 버스노선의 신설 및 변경 운영
2. 버스공동배차제의 실시
3. 교통산업종사원의 근로환경의 개선
4. 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정류소 및 환승시설의 설치·운영
5. 교통수단간 환승요금제의 실시
6. 택시 사업구역의 확대 또는 축소
7. 교통시설의 확충(당해 시·도지사가 관할하는 교통시설에 한한다)
8. 교통영향평가에 의한 교통개선대책 및 조치사항의 이행(시·도지사가 사업시행자이거나 교통시설의 관리청인 경우에 한한다)

9. 그밖에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 (교통수요관리의 시행) ①시장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대기오염의 개선 및 교통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관할지역안의 일정한 지역에서 다음 각호의 교통수요관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시행할 수 있다.

1.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제한에 관한 사항

2.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혼잡통행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통행량의 분산 또는 감소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수요관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공청회 등을 거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수요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조례가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18조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①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안에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제3조제1항제1호의 지역안에 있는 시설물로서 그 면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으로 한다.

제31조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설치) ①기본계획의 시행 및 도시교통의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안에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 및 시에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1.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혼잡통행료

2.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3.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4. 그밖에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도시교통과 관련한 수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2006.7.19 법률 제7969호]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의한 경우와 위험 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의하여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을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의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6.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제160조 (과태료)

③차가 제5조, 제13조제3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3항, 제32조 내지 제34조 또는 제6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주등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제1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제15조제3항·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 주차장법

[일부개정 2005.7.13 법률 7596호]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0.4.7, 1991.5.31, 1991.12.14, 1995.12.29, 2000.1.28, 2003.12.31, 2005.5.31>

1. "주차장"이라 함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 노상주차장 :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 노외주차장 :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 부설주차장 :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당해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제19조 (부설주차장의 설치)

⑤제1항의 경우에 시설물의 위치·용도·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함으로써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된 비용은 그에 갈음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제24조 (영업정지등)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의 관리자 또는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을 금지하거나 300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1991.12.14, 1999.2.8>

1.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등이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게 된 때
2. 삭제 <1999.2.8>

3.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제24조의2 (과징금처분) ①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천시 공고 제 2007 - 1481

제천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10. 30

제 천 시 장

### 제천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제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에서 적용한 상위법의 법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본문의 인용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1조 중 “주차장법 및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주차장법」”으로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조제3의2호 각목”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조제1항”으로
- 제3조 제3호의 “노외주차장”을 “부설주차장”으로 하고, 제4호중 “과징금의 징수교부금(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제10호의 도로교통법 관련조항 “제115조의 2”를 “제160조제3항”으로 개정
- 제4조 제5호의 “법 제19조의3”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3조제 1항”으로 하고, 제6호의 법 “제19조의10”을 “「도시교통정비 촉진 법」 제15조”로 개정함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년 11월 19일

까지 제천시장 (참조 교통팀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5270, FAX 641 - 5279 담당자 : 641 - 5271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기타 참고 사항 등